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10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의자 : 윤영석 · 김대식 · 서일준

이종배 · 임종득 · 조경태

최형두 · 유용원 · 강명구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축산 농장의 대규모화를 지원하여 축산업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하는 제도임. 특히, 환경규제 강화,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축산농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폐업 지원 세제 혜택은 축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산업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한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는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8년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상속으로 인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 상속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u>감면한다.</u> ② ~ ④ (생략)	<p>----- -----</p> <p><u>감면하며, 상속으로 인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 상속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